

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일정(안) 안내

-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우리 교육청 시험일정(안)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시험 준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시험별·직렬(직류)별 선발인원을 포함한 「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」는 2020년 3월 중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(<http://www.goe.go.kr>)등을 통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.
- 이번에 공지하는 일정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니, 수험생 여러분은 반드시 「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」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□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일정(안)

시험공고	원서접수	시험일정		
		필기시험	면접시험	합격자발표
3월	4월	6. 5.(토)	7월	8월

※ 상기 시험일정은 시험운영 준비과정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므로 「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」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시험 관련 문의처 :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인사담당(☎ 031-820-0574, 0576)

참고 1

2021년도 기술계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경력경쟁 임용시험 과목(출제범위) 안내

시험명	직 급	직 렬 (직 류)	시 험 과 목(출제범위) (1·2 차 병합시험)
경력 경쟁 임용 시험	9급	공 업 (일반기계)	제1차 필수(1) : 물리
			제2차 필수(2) : 기계일반 기계설계(2015 교육과정상 '기계제도' 교과에서 출제)
		공 업 (일반전기)	제1차 필수(1) : 물리
			제2차 필수(2) : 전기이론, 전기기기
		시 설 (일반토목)	제1차 필수(1) : 물리
			제2차 필수(2) : 응용역학개론(2015 교육과정상 '토목일반' 교과에서 출제) 측 량(2009 교육과정상 '측량' 교과 이론 포함 출제)
		시 설 (건 축)	제1차 필수(1) : 물리
			제2차 필수(2) : 건축계획, 건축구조

※ 상기 기술계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험과목(출제범위) 변경사항에 대한 안내이므로, 선발 직렬은 「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지방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」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[2021년 달라지는 시험제도]

- **통신·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공통적용 가산점 폐지**
- **연구·지도직 공개경쟁임용시험 과목 대체 안내**
 - **영어 과목: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**

시험의 종류		기준점수	
		기준점수	청각장애
토플(TOEFL)		PBT 530점 이상	PBT 352점 이상
		IBT 71점 이상	-
토익(TOEIC)		700점 이상	350점 이상
텡스 (TEPS)	(2018. 5. 12. 이전에 실시된 시험)	625점 이상	375점 이상
	(2018. 5. 12. 이후에 실시된 시험)	340점 이상	204점 이상
지텔프(G-TELP)		Level 2의 65점 이상	-
플렉스(FLEX)		625점 이상	375점 이상

- **한국사 과목: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**
 - 기준점수(등급) : 한국사능력검정시험(국사편찬위원회) 2급 이상
 - 국사편찬위원회의 정규(정기)시험 성적만을 인정하며, 정부기관·민간 회사·학교 등에서 승진·연수·입사·입학(졸업)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·특별시험의 성적은 인정하지 않음
- **영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**
 - 「공무원임용 시험령」을 준용하여 제1차 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(등급)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,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함
- ※ 상기 사항은 연구직·지도직 공개경쟁임용시험 과목 대체에 관한 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, 해당 직렬 선발 및 시험 실시 여부는 「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」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[2022년 달라지는 시험제도]

□ 9급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전문과목 필수화

- 교육행정 및 사서직렬 선택과목 개편, 조정점수 폐지

[2023년 달라지는 시험제도]

□ 기술계고 졸업(예정)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 기준 개정

현행	개정
특성화고·마이스터고 졸업자 및 0000.2월 졸업예정자	특성화고·마이스터고 졸업자 및 0000.2월 졸업예정자 ※ 졸업자의 경우 졸업일과 최종시험(면접시험) 예정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자만 응시 가능